화학과 조교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 결과 1차 보고서

화학과 조교 성추행 사건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 목차 ♤♤♤♤♤♤♤♤♤♤♤♤♤♤

◐ 진상조사단장 인사 ---------- P.2

◐ 사건의 경과와 진상조사단 활동내용 ------- P.3

◐ 진상조사내용

1. 성추행 여부에 관하여 ---------- P.4

2. 해임 여부와 해임 이유에 관하여 ---- P.7

3. 그외 문제와 사건 축소은폐 기도에 대하여-P.10

◐ 조사별첨자료 ---------- P.12

◐ 각 단체의 입장

1.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 ---------- P.21

2. 총학생회 --- ---------- P.24

3.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 ---------- P.26

♤♤♤♤♤♤♤♤♤♤♤♤♤♤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관악 공동체의 2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쾌한 마음, 풍성한 열매의 수확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한 2학기. 관악의 3만 가족들에게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화학과의 한 여조교의 자보는 관악 3만 가족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리의 상아탑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성의 산실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난 '교수에 의한 조교 성추행 사건'은 스캔달이 아닙니다. 바로 학원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관악인 모두의 문제이며 학원을 진보적 지성의 산실로 진보적 생활공동체로 만들어가는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가 모여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제안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건만은 관악인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하고 숨어있는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학원사회의 문제의 심각성과 그 고질적 병폐만큼이나 진상조사의 과정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본부, 교수님, 학생들 관악 학원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는 한낱 희망에 불과함을 알게되었고 사건 자체의 복잡함과 난처함은 조사 자체의 진행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건해결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정 우리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려는 관악의 2만 학우들, 관악의 살림들을 맡아가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악 학원사회의 어르신이고 지성과 인격의 상징이신 교수님들 모두의 학원에 대한 애정어린 실천과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학원사회를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우리들 모두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이제 그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화학과 조교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장 박중석

사건의 경과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내용

6월 25일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근무 시작, 1년 1개월이 된 상태.
6월 28일:재임용 불가의 사유를 ㅅ교수에게 문의. '담당교수의 개인적 기준' '1년마다 조교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답변.
6월 29일:학과장님과 면담
7월 26일:총장님께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
8월 5일:화학과 학과장님과 ㅅ교수께 건의서 제출
8월 16일:총학생회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됨
8월 23일:총학생회 내의 연계집행국 회의(학원개혁위, 인권위, 학술국, 정책국)
8월 24일:대자보 공식 게재
첫 대책회의(총학생회, 자치회, 여성동아리)
8월 25일: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8월 30일:진상조사단 구성
9월 3일:진상조사 결과 공개발표회 및 공개토론회

ㅇ양의 대자보가 나붙은 24일, 도서관에는 폭탄 하나가 떨어진 듯했다.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에서도 화학과 대학원생들과 학교직원들이 대자보를 찢는 등, 소란이 있었고 충격적인 내용에 발디딜 틈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자보를 읽었다.

다음 날 바로 'ㅇ양은 해임된 것이 아니라 재임용이 안 된 것이며 이유는 근무태만이다. ㅇ양은 다정다감한 교수님의 성격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22동 309호 화학과 대학원생 명의의 반박대자보가 붙었다. 이를 둘러싸고 'ㅇ양의 해임이유는 성희롱에 대한 거부라고 보이며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22동 309호실 외의 화학과 대학원생의 대자보가 붙었으며, 충격과 분노,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의 대자보가 붙었다.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회협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학원전반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자보가 붙은 다음 날, 8월 25일에 관악 내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대학당국과 교수협의회에 구성요청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기다렸지만 30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대학당국에서는 '학생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8월 24일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던 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협의회,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협의회만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을 결의하고 8월 30일, '화학과 조교 성추행 사건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대자보를 통해 알리고 진상조사작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이 사건에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 1.성추행 여부와 2.해임과정에서의 문제, 3.그 외의 문제라고 정하고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조사작업을 계속하였다. 조사작업의 중점은 ㅇ양의 대자보에 실린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대자보에 언급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대자보에 실린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비밀보장의 문제 때문에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ㅇ양의 근무태도와 근무일지 조사, 교수님에 관한 의문들,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교임용에 있어서의 모순적인 부분, 대학원에서의 교수와 학생 간의 봉건적인 관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질적으로 8월 24일부터 시작되었던 조사작업은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사건 축소 은폐 움직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9월 1일, 대자보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일차적으로 종료되었고 이를 공개발표회와 토론회를 통해 알리고 광범의한 학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상조사 결과 1. 성추행 여부에 대하여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의식을 조장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여기에는 강간뿐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 전화, 아내구타,인신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제작 판매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흔히 성폭력 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강간, 강제 추행 강간 미수 등)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접촉,성적 희롱등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의 여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데 있지 결코 그 정도나 정조의 침해여부가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다. 실례로 음란한 언어행위가 한 사람을 죽인 경우(1992년 6월에 pc통신을 본 여중생의 자살 사건)를 보더라도 성폭력은 그 모두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며 그 정도는 단지 객관적 으로 드러나는 행위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성추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강제 키스,포옹,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 등-과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행위-성기 노출,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그림 사진등을 보게 하는 것 등-와 본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여타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조장된 성적인 접촉이나 희롱등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 심리적으로는 그런 경우를 또 당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수치감,죄의식,그리고 남성혐오 등을 느끼게 된다.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일 경우에는 거부했을 경우 오는 경제적 손실(해임,승진 기회 박탈,임금 상승에서의 배제,소극적인 일 수행등)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ㅇ조교의 호소문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번사건의 진상조사를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했고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성폭력의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발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발표하는데 있어서도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1.조사 사실

1)ㅇ 조교 경우

:본인이 진상 조사단에 출두하여 아래의 내용을 진술 하였고 이후 목격자 면담을 통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 1992년 5월 초 3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어 담당교수인 ㅅ 교수의 출근 요청을 받아 근무 시작.
- 업무 내용: NMR 기기의 관리및 운영.
- 성추행 사례:

기기 연수시 교육을 빙자하여 팔을 잡고, 등을 어루 만지는 듯이 쓰다듬음.
기기운영상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컴퓨터 앞에 있는 ㅇ조교의 등뒤에 서서 양

팔을 내밀어 뒤에서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여 본인으로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함.
(이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실험실 학생들과 입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담당교수 자신과 단둘이서만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
10월 경에는 담당 교수가 사용하던 의자를 고치기 위해 교내 목공소 까지 동행 요구. 이 때 관악산으로 매일 산책하자고 요구하며 청바지와 운동화를 가져다 놓고 자신의 연구실에 서 갈아입어도 된다고 말함.
(이상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ㅇ 조교는 교수의 제안을 거절 교수에 대해 불쾌감을 갖게 됨.
산책을 거절한 이후 담당교수의 호의적인 태도 완전히 바뀜.심지어 기계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해도 담당조교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함.
(성추행 거절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해)

2)A양 경우

:서울대 총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8월 27일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한 후 진정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 198●년 서울 대학교 화학과에 발령받은 후 ㅅ 교수의 추천으로 23동 108호에서 근무.
- 성추행 사실: 근무중에 업무및 전달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수는 연구실로 A양을 불러 가까이 앉으라며 의자를 잡아당게 앉게 하고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귀엽고 예뻐서 이러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등 몹시 불쾌하고 불안한 상황을 만듦.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근무지에 청바지와 운동화를 놓아두라고 하면서 매일 산책할것을 제의.
입방식을 제의하여 담당교수와 단둘이서 강남 부근에서 입방식을 함. 이 때 교수가 'A양과 교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고 물어' 아버지와 딸로 보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자 '연인으로 하면 안될까?'라고 말하며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팔장을 끼게 함.
(이상 지속적인 데이트 강요 및 성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언행)
이상의 일들이 교수가 접근해오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교수의 접근을 경계함.
이러한 태도를 보인 후 ㅅ 교수는 근무상황이 바뀌게 되었으니 다른 근무지로 옮길것을 통보함.
(이상 성추행 거부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함)

3)전임자의 경우

:8월 27일 진상 조사단 3인과 직접 만남 자리에서 아래의 사실을 진술함
- 199●년 5월 말부터 출근 이듬해 5월 중순까지 근무.8월 말경부터 교수와 대면.
-성추행 사실:
대면시 부터 매우 호의 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귀찮을 정도로 점심및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의 받음.
기기사용 연수 중 교육을 빙자하여 여러번에 걸쳐 손을 잡았고 등뒤에서 포옹하는 듯이 양팔을 내밀어 시범을 보임 .
199○년 11월 말 근무시간 중 남한 산성에 가자고 강요.남한 산성에서 추운 날씨를 빌미로 교수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라고 하고 어깨를 끌어 안음.또한 정상에서 아래를 관망하는 사이에 등 뒤에서 포옹함.
(이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목공소를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업무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교수자신의 사소하고도 하찮은 일까지도 함께 하자고 요구.
청바지와 운동화를 기기실내에 가져다 놓고 매일 산책할 것을 제의 이에 갈아입을 곳도 마땅치 않으니 매일 산책은 어렵겠다고 하자 교수의 연구실에서 갈아입으면 된다고 하는 등 산책할 것을 종용
남한 산성에서 '우리사이에도 사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을 함.
저녁식사를 요구 하며 '사람들이 늙어 보인다는 말을 할 때마다 외롭고 고독하니 자주 만나 기분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함.
63빌딩 피자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을 때 '교수라는 직업은 따분하고 고독하니 그 무료함을 달래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99●년 12월 중순 2일간의 휴가를 함께 갈 것을 제의. 이에 거절하며 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는 반문에 무슨 재미로 부인과 휴가를 가냐며 제의를 거절당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불유쾌함을 단적으로 드러냄.
(이상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및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언행)
휴가동행 거부 이후 퇴근 시간을 오후4시-4시 30분으로 종용. 이후에 출퇴근 시간 조차 지키지 않으니 성의 가 없으며 자격이 없고 무관심한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며 해임시킴.
(이상 성추행 거부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함)

4)기타: 대자보에 언급된 자신의 지도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기 시작하여 남한 산성으로 독립기념관으로 단둘이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결과 사실임이 확인 되었다.

조사결과 ㅅ 교수는 NMR operater및 대학원생에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성추행 하였음이 밝여졌고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전의 호의적인 태도 에서 돌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마저 방해하여 해임의 구실을 만들었다.

진상조사 결과 2. 해임 여부와 해임 이유에 관하여

근무태만과 재임용에 관한 진상조사는 ㅇ 양의 자보가 붙은 이후 대자보 논쟁을 통해서 이 부분이 성추행 자체의 사실여부의 조사와 더불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된다는 판단과, 주장과 주장으로 대립되었던 논쟁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판단, 그리고 이 문제가 성추행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 수준으로 이 사건자체와 관련지어 주로 대자보 상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1. 기간의 대자보 논쟁

근무태만, 능력부족과 재임용에 관련지어진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ㅇ 양의 자보:

근무를 시작한 1992년 5월 29일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지난 6월 25일에 5일후인 7월 1일 이후로 출근을 중지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평소에 성적 접근을 해왔으며 그에 대한 ㅇ 양의 거부로 인해 교수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임시킨 것임. NMR Operator대한 임명권은 실제적으로 담당교수에게 있었음. ㅇ 양은 전임조교들보다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처리하고자 노력했으며 하루동안의 샘플 처리량은 교수의 지시에 따랐음.

22동 309호 명의의 자보:

ㅇ 양은 홍익대 출신이며, 재임용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근무중 다른 시험준비도 하고 있었는등의 근무태만과 능력부족으로 인해 연구에 지장이 되었기 때문이며, 규정상 당연히 임기가 끝나는 시기(조교 임기는 1 년)이므로 해임이 아니라 재임용되지 않은 것이다.

화학과 대학원생(들) 명의의 자보:

A. 화학과 대학원생들 : 22-309 호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그 담당교수이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함.

1) 해임이 아니라 재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ㅇ 양의 실제 근무기간은 1 년 1 개월, 그래서 재임용된것으로 봐야 하나 담당교수는 그만두라고 강요. 게다가 그 자리는 수 년 동안 계속해서 타 대학 출신 여자였는데 ㅇ 양의 사건 직후 본과 출신 남자로 바뀜. 성추행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결과. 따라서 해임이다.

2) 능력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때 까지 수 년간 타대학 출신, 대부분 학사출신 여자만 조교로 임용. 사건 직전, ㅇ 양 후임으로 지방 K 대 출신 학사출신 여자가 내정되어 있었음. 그 자리는, 화학과 다른 실험 담당 조교와 달리 능력 부족 운운 할게 없으며, 오래 있을수록 수련되어 자주 바뀔 이유가 없음은 다른 교수님도 언급.

B. 화학과 한 대학원생

22-309 호 대학원생들의 생각은 화학과 많은 대학원생들의 생각과 상반됨. 그 이유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심정적으로 그 교수가 그랬을것이라고 생각. 또 80 년대 초에도 그런 소문이 화학과 내에 있었다.

2. 진상조사의 내용이 되었던 것들

기간의 대자보 논쟁과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을 하는 속에서 일차적으로 다음의 부분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크게 다음의 세가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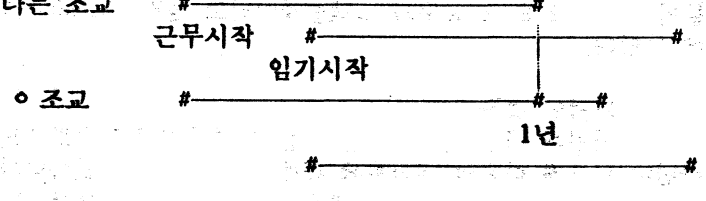
하나. 22동 309호 명의의 대자보나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해임의 가장 큰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근무태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해임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둘. 해임이 아니라 재임용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어디에서 근거하며 타당성은 있는가? 그리고 임용 제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셋. 능력부족이라는 것의 근거는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3. 구체적 조사내용과 그에 기반한 판단
위의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조사내용과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적도록하겠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해
ㅇ 조교에게 샘플을 맡기고 찾아가고 했던 모 유기화학 교수의 실험방 대학원생들은 ㅇ 조교가 있는 동안 작업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실제로 샘플처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그 원인이 NMR Operator의 근무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자신이 그 조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태만에 대해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60MHz 기기가 고장난 것, 하루에 처리하는 샘플 처리량(하루에 10개)을 제한한 것, NMR 기기가 그 교수의 소유처럼 되어있어 오전에만 샘플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교수님방 실험에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화학과의 조교를 한 한 대학원생은 NMR기기를 관리한 그 교수의 연구실에서 올해 C13이라는 화합물을 연구하면서 3일이상씩 그 방에서 기기를 독점한 것이 샘플처리 속도가 느려진 이유라고 말하였으며 화학과 대학원생 중 NMR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화학과에서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NMR Operator의 임무와 권리는 기기 작동에만 있으며 샘플처리량이나 하루 작업량 등은 교수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ㅇ 조교의 근무태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현 수준에서 지시된 작업량을 소화해 내었느냐 아니냐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근무일지에 대해 보고를 하면 그 이전 담당자들의 근무일지와 비교해 볼 때 이전보다 작업량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다.(구체적인 근무일지는 양이 너무 많아 자료집에 싣지 못하며 발표회장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임용에 대하여
우선 화학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교 임용과 재임용 제도에 대해 조사된 바를 정리해보자. 화학과 조교들의 증언을 빌리자면 규정상으로는 3월1일과 9월1일에 임용되나 대부분의 과에서처럼 화학과에서도 발령받기 전에 실무를 배우고 이월받기 위해 한,두달 정도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며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월급을 받아서 1년동안 공식적인 임기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유급조교의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며 화학과 내규로 실험 조교를 들어가는 6명은 석사학위이상 NMR Operator는 학부졸업도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지어 실제로 진행된 사실을 정리해보겠다.
첫째. 하나의 관례로 이어져온 화학과 조교 임용에 대해 우선 ㅇ 조교와 다른 조교를 비교해 보겠다.

두 조교가 같은 날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발령을 받았다고 할 때



(두 줄중 위의 것이 실제 근무기간, 아래의 것이 임기기간임)
위와 같이 조교의 실제 근무기간과 임기기간은 계속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ㅇ 양은 근무를

시작한 1992년 5월29일에서 1년 1개월이 지난 시기에 출근 중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것이다. 즉 다른 조교는 근무시작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근무를 마치게 되고 그 때 재임용 여부의 결정을 하게된다. 발령일로부터 1년동안 공식적인 임기를 가지게 된다. 다시말해 재임용 여부의 판단은 1년이 지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조교들의 이 사실에 대한 진술과 ㅇ 양의 탄원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

둘째. ㅇ 조교가 해임될 때 경북대 여학생으로 이미 후임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화학과 남학생으로 교체가 되었고 내규상으로 석사이상, 반드시 남자, 오전에는 NMR기기를 다루고 오후에는 실험조교를 하도록 바뀌었다.

세째. NMR기기가 그 교수의 사유물처럼 관리되면서 NMR Operator의 임용과 관리가 모두 실제적으로 그 교수의 권한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그 교수의 권한이 없어지고 학과장의 권한에 의해 교수회의에서 내규의 수정과 후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능력부족에 대해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화학과 조교는 NMR Operator는 능력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근무하고 숙련될수록 그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전의 화학과 내규를 (즉 NMR Operator는 학사 졸업도 가능하며 타학교 학생들도 임용이 되었다는 것) 근거로 할 때 능력이 중요시되는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 화학과 교수 내에서도 동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첨가자료

화학과 유급조교 업무 인수인계 및
임용 실태에 대한 건 화학과 유급조교 3인의 자필 진술

본인은 93년 2월 15일부터 화학과 유급조교로서 전임조교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조교업무를 수행해왔읍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공무원 발령장을 받은것이 93년 4월 26일 이었으므로 동년 5월 17일에 5월분 월급과 4월분 (5일간) 월급을 수령하였고 전임조교로부터 4월분 월급중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금액에서 2/3를 받고서 화학과 사무실에 증거 자료를 작성해 놓았읍니다. 따라서 저의 업무는 93년 2월 중순에 끝나게 되지만 서류상 사직일자는 94년 4월 26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94년 3월분 월급과 4월의 월급(일부 수당을 본인이 전부 수령하고 나머지 총액의 1/3)을 본인이 수령할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93년 2월 15일 부터 하학과 유급조교로서 조교로 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 인계를 받기 시작하여 후 계속해서 조교업무를 수행하였읍니다.
그러나 정식 임용은 4월 26일자로 이루어 졌고, 4월 17일에 4월26일 ~ 4월30일과 5월분 급료를 수령하였읍니다.
후임 조교는 93년 3월까지의 월급 전액은 수령하고, 4월 1일 ~ 25일까지의 월급을 수령하여 그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 액수를 지급, 수령한 사실은 서류로 작성. 근거를 남기바 랐읍니다.
본인의 서류상 임용기간은 94년 4월 25일까지이나 94년 1학기 준비가 시작되는 94년 2월 15일경에는 후임조교에게 업무가 인수 인계되었으며, 이 때 2월과 3월의 급료는 본인이 전액 수령하고, 4월 급료로 본인이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나에서 명하는 대로) 후임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인은 93년 2월 25일경 신학 모음 원에 서류를 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93년 3월 2일부터 지금 현재 업무를 시작해 왔읍니다. 현재 9월 2일이 되었으나, 업무 수행만 하고, 월급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그 외 문제와 사건 축소은폐 기도에 대하여

1. ㅅ 교수의 측근인 22동 309호의 대학원생들은 한 피해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호소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함으로써 명백히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였다.

2. ㅇ 조교의 호소문이 게제된 이틀 후인 지난 8월 26일 밤 대학원생 두 명은 호소문에 포함된 피해사례 중 가장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한 피해여성의 집에 불쑥 찾아갔다. 한밤 중에 갑자기 찾아가 혼자사는 여성을 놀라게 한 그들은 ㅇ 조교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라는 내용의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3. 그 피해여성이 폭로내용은 사실이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4. 이에 그 여성이 "나는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죄가 되느냐"고 따지며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버티자 그러면 ㅇ 조교에 피해내용을 알려주고 진술서를 쓰기는 했지만 공개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5. 결국 그들은 '공개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에 도장을 받았다.

6. 우리는 대학원생들이 독자적으로 이와 같이 진실을 은폐, 조작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박사 한 분이 실험실에서 나가게 된 경위

1.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ㅅ 교수는 ㅇ 조교의 행동을 사전에 막지못한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라며 평소 ㅇ 조교와 친했던 연구원 한 명을 실험실에서 축출하므로써 학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보복을 자행했다.

2. 그 연구원은 지난 86년부터 올해까지 만 7년이 넘게(중간에 군복무 6개월 제외) ㅅ 교수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는 실험실에서 가장 오래 있은 사람으로서 경험이 많았고 따라서 NMR기기를 포함하여 사정에 능통해 있었다. 자연히 ㅇ 조교가 부임할 당시 테스트를 하였고, ㅇ 조교에게도 직접 기기조작 방법을 가르쳤다.

3. 모 박사는 올해 박사학위를 받고 학위논문을 외국 학술잡지에 싣기 위해 보충실험을 하고 있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ㅇ 조교 문제가 발생했고 ㅅ 교수의 질책을 받게 되었다.

4. ㅅ 교수가 ㅇ 조교에게 이제 그만 출근하라고 말한 93. 6. 25. 모 박사는 ㅇ 조교로부터 교수님한테서 무슨 얘기 못들었느냐는 말을 들었으나 모 박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때 처음 모 박사는 ㅅ 교수가 ㅇ 조교를 재임용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ㅇ 조교로부터 전해들었다.

5. 93. 7. 2. ㅇ 조교와 모 박사 그리고 현재의 실험실장은 ㅅ 교수에게 호출되었다. 그 자리에서 ㅅ 교수는 사제지간의 정을 모르고 가정교육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모 박사는 그 말이 자신과 ㅇ 조교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6. 그 다음날인 7. 3. 오전 11시 경 ㅅ 교수는 실험실의 학생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심기가 불편하고 연구할 의욕도 생기지 않으니 8월 말까지 실험실 문을 닫겠다고 선언하였다.

7. 그 직후 ㅅ 교수는 모 박사를 따로 교수연구실로 불러서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 후 "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자네가 하던 일은 그만두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누가 하든지 할테니까 이쯤에서 그만두고 월요일까지 짐정리하고 내려가게"라고 말하였다.

8. 모 박사는 순간 실험실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 자신을 내려보낼려고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다음 주 월요일 짐을 정리하여 실험실을 떠났다.

9. 그리고 일 주일도 못되어 실험실을 다시 개방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실험을 계속하였고, 모 박사는 실험실에 나오지 못하였다.

10. 그 후 모 박사는 후배를 통해서 ㅅ 교수가 실험실 열쇠를 전부 교체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더욱 참담한 마음이 되었다. 모 박사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지난 8년 동안 열쇠를 교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11. 7. 10. 경 화학과의 다른 교수로부터 호출을 받고 그 교수의 연구실에서 면담하였다. 그 교수는 ㅅ 교수로부터 모 박사가 ㅇ 조교를 도와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잘못하다가는 자네도 '큰 코 다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하자 그 교수는 역정이 수그러져 결국은 모 박사를 이해하면서 헤어졌다고 한다.

12. 모 박사는 그 후에도 실험실에 나가지 못했으며 보충실험이 중단되어 외국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는 모 박사 개인의 불이익은 물론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임에 틀림없다.

13. 결론적으로 ㅅ 교수는 전혀 근거도 없이 모 박사가 평소 ㅇ 조교와 친해가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ㅇ 조교를 도왔으리라 추측하고, 모 박사를 실험실에서 쫓아냄으로써 보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처사는 학문을 하는 교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학문적 태도이다.

ㅇ 조교의 대자보 문안

**** 민족 서울 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참 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성 희롱을 밝힙니다 -

저는 자연대 화학과에 유급 조교로 있는 ㅇ 조교입니다. 현 화학과의 기기 담당으로 있는 ㅅ 교수님의 면접과 테스트를 거쳐 지난 1992년 5월 29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1년의 조교 임기가 만료되어가던 1993년 6월 25일에, 5일 후인 7월 1일 이후로 출근을 중지하라는 ㅅ 교수님의 통고를 받기에 이르러 해임 아닌 해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천인공노할 부정한 사실이 수년에 걸쳐왔음을 알았기에 서울대의 모든이들에게 고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ㅅ 교수님은 출근을 요청하던 당시인 1992년 5월 초에는 다른 6명의 화학과 유급 조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저의 업무의 특수성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NMR 기기의 교육 기간이 특히 장기간에 걸치므로 조교의 임용이 1년을 단위로 이루어지나 최소한 2년은 NMR operator로서 자리를 지켜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큰 무리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했고 출근하면서부터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신원 조회를 하고 임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2 내지 3개월) 동안에는 보수마저 없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정식 임용은 8월 10일이었지만 서둘러 근무하게 된 이유는 저의 전임자 역시 나와 같은 이유로 임기를 못마치고 해임되었기에 그 빈 자리를 서둘러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고 임용을 받는 기간 동안에 담당 교수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담당 교수는 교육을 빙자하여 기기에 대한 연수를 하는 동안에 연수 과정이나 교육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으로써 저의 팔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게다가 기기 운용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척하며 컴퓨터 앞에 앉은 저의 등 뒤에 서서 양팔을 내밀어 뒤에서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여 저의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 출근하던 당시 실험실 학생들과의 '입방식'을 한 후의 시기에 담당 교수는 실험실 학생들과의 '입방식'도 입방식이나 교수 자신과도 '입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으나, 행정적인 임용이 되던 즈음에서는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교수 자신과 단둘이서만 넥타이 메고 가는 곳에서 입방식을 하자'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교수가 하는 언행으로서는 의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수의 행동을 미심쩍게 여기고 있던 차에 사직한 저의 '전임 조교'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역시 담당 교수 자신이 추천을 하여 임용되게 한 '여성'인 '전임 조교'에게 어떠한 추행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조교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수 자신이 하여도 될 아주 사소하고 하잘것 없는 교수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기기실에서 업무 수행을 하여야 할 저를 불러 세워 놓은 채로, 보고 있으란 듯이 하기도 했으며 그 자신의 사소한 일에도 동행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후 10월경 담당 교수는 자신이 사용하던 의자를 고치

기 위해 교내 목공소까지 동행을 요구하여 가는 도중 '관악산 허리에 조용한 산책길이 있으니 매일 산책을 하자'며 청바지와 운동화를 가져다 놓고 갈아 입을 곳이 없으면 교수 자신의 연구실에서 갈아입으면 된다는 담당 교수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당 교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불쾌감을 갖게 되었는데, 공무원의 임용 발령을 받은 후의 어느날 사직한 저의 전임자를 만나게 되었고 전임자는 전임자 자신이 찾아온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는 부탁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전임자의 이야기 -

제가 처음 출근할 무렵엔 기기 담당 교수가 외국에 가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대면할 기회가 없었으며 담당 교수가 외국에서 돌아온 8월말부터 대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당 교수는 대면시부터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교와 담당 교수와의 관계로 생각하기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귀찮을 정도로 점심 및 저녁 식사를 단둘이서만 함께 하자는 제의를 비롯하여 기기 사용 연수를 하는 동안에는 교육을 빙자하여 저의 손을 잡는 것은 다반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기 운용상의 기술 등을 전수하는 척하며 저의 등 뒤에서 포옹하듯이 양 팔을 내밀어 시범을 보이고 근무 시간중에는 업무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담당 교수 자신의 사소하고도 하찮은 일까지도 함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교수 자신의 사적인 일로 교내 목공소에 갈때도 저와의 동행을 요구하며 저와의 산책을 즐기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던중 담당 교수는 저에게 간편한 청바지와 운동화 따위 등을 제가 일하는 기기실내에 가져다 놓고 '매일' 산책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절의 뜻으로 청바지를 갖다 놓는다 하여도 갈아입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하니 매일 산책은 어렵겠다고 하자 교수의 연구실에서 갈아입으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지나친 호의는 그외에도 심히 부담을 주었는데 혼자 자취를 하는 제가 이사를 한다고 하자 이사를 도와 주겠다며 이사를 도와주면 저의 집에서 커피 한 잔 줄 수 있겠냐는 호의를 넘어선 언행은 전혀 납득할 수 없었으며 교수가 직원인 '조교'를 대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1991년 11월 말경' 눈이 많이 오던 추운 겨울, 근무 시간 도중인 오후 3시 반경에 담당 교수는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은데 남한 산성을 가자고 동행을 강요하여 내키지 않는 동행을 하게 되었으며 남한 산성에 도착하여서는 그 추운 날씨를 빌미로 교수의 주머니에 저의 손을 넣으라고 하며 어깨를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보였고 정상에 이르러서는 산아래를 잠시 관망하는 사이에 저의 등뒤에 서있던 교수가 뒤로부터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러한 교수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여 몸을 뿌리쳐 빼내고 하산을 요구했으나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담당 교수의 "우리 사이에도 사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이었으며 이 말은 담당 교수의 모든 행동에 대한 그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교수는 하산을 요구하는 저에게 오히려 저녁 식사를 요구했으며 그 요구는 추운 겨울 차편이 없는 산 정상에서는 따를 도리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건설적인 화제를 꺼내어 보았으나 '여자가 공부해 보았자 소용이 없

다, 쓸데가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다녀온 후 사람들이 늙어 보인다는 말을 할 때마다 미웁고 고독한데 자주 저를 만나 기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한 산성을 다녀온 며칠후 남한 산성을 다녀온 것과 같은 기회를 자주 갖자고 하는 교수에게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음 기회에 제가 대접하면 어떻겠느냐는 빈 말을 하게 되었지만 담당 교수는 그날 당장에 날을 잡으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63 빌딩내에 있는 피자집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도 연구적인 면을 묻는 저에게 '교수라는 직업은 따분하고 고독하여 그 무료함을 제가 달래 주기를 바란다'는 교수의 언행은 연구에 몰두하고 학문을 사랑해야할 '교수'로서 더군다나 국내 최고의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로서 그 자질을 의심하게 하였고 이런 교수가 서울 대학교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구비의 국가적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1년 12월 중순' 담당 교수는 2일간의 휴가를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하였고 '사모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떠시냐'는 저의 반문에 '무슨 재미로 부인과 휴가를 가냐'며 저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데에 대한 실망과 불유쾌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었기에 저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선물까지 교수에게 건네면서 휴가를 잘 다녀오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휴가 이후 해가 바뀌어 1992년도가 되면서 담당 교수가 제시했던 '휴가 동행' 거부 이후 담당 교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순적인 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기의 컴퓨터는 두 군데의 열쇠로서 작동을 실행 및 정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 종료후 귀가시엔 반드시 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의 지시는 그 두 군데중 한 군데만을 끄도록 지시한 반면에 담당 교수의 실험실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두 군데 모두 꺼야 한다고 저에게 말하므로 인해 저는 기기 관리의 혼란을 가져왔고 동일한 기기관리를 두 가지로 말하던 담당 교수의 의도는 구실을 만들려고 했던 너무나 명백한 모순된 처사인 것이었습니다. 담당 교수의 모순된 행동은 저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 내지 4시 30분경으로 거의 종용하다시피한 것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할일 다 했으면 퇴근하라는 교수님의 지시로 인해 타의 실험실이나 조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출퇴근 시간 조차도 지키지 않으니 성의가 없다는, 그래서 자격이 없고 무관심한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해임의 이유는 그 당시에도 너무나 치졸하게 여겨진 만들어진 구실이었습니다.

전임자의 얘기를 듣고 경악한 저는 저의 태도를 확실히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전임자에게 그랬듯이 교내 목공소까지 동행을 요구하면서 매일 관악산으로 등반 산책을 하자고 하시며 청바지와 운동화 얘기를 하시던 교수님의 면전에서 '싫다'고 거절을 하는 한편 저의 업무와 관련있는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여 문책을 받지나 않을까하여 열심히 기기 관리 및 운용 방법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의 '산책' 제안을 거절한 이후로 담당 교수의 호의적이었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공적인 일에까지도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저의 조교 업무가 수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기 관리면에서 담당 교수의 '마음에는 들지 않으나 싫은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서' 업무상의 지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담당 교수의 말은 공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담당 교수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온 사실의 또다른 표현이며 조교의 업무 수행 자체를 무시로 일관했음을 증명하여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의 지난 재직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 도중 기기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담당 교수의 태도를 설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기에 이상이 있음을 보고해도, 눈에 보이는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방치하여 두어 업무상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담당 조교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여서 민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 시료의 측정에 있어서는 담당 교수가 하루의 측정량을 정하고 정량적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때때로 구두 확인을 하였기때문에, 시료의 측정 의뢰가 그 처리 되는 양을 두 세배 웃도는 때에는 "아무리 측정 의뢰 시료가 많아도 안 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까지 하여, 하루의 정해진 시료 측정 후에도 여력이 있어 '지시되었던 일정량' 이상의 시료 측정을 건의하고저 했던 저의 생각은 한마디도 드리지 못한 채 여지 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시료의 정량적인 처리로 인해 의뢰 시료의 측정이 지연되었고 그러한 시료 측정의 지연은 제가 담당하는 기기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유기 화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및 이하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되었으나 담당 교수는 여타의 교수님들께는 그러한 의뢰 시료에 대한 측정의 지연을 담당 조교의 불찰때문인 것으로 담당 조교를 대신하여 사과까지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억울한 '담당 조교의 불찰'입니까!

저의 조교 업무 수행상에서도 담당 교수의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곤란을 주었던 담당 교수는 1992년 5월 19일부터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2개월이 넘고 있는 저의 재임용을 어렵게 하여 그간 저에 대하여 가져왔던 감정을 일시에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무 기간이 1년 1개월이 넘는 지난 1993년 6월 25일에 이르러서 5일후인 7월 1일부터 출근을 중지하라는 말을 한 담당 교수는 현재 화학과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제 근무 시기와 및 기간조차 완전히 무시하고 형식적인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빌어 저의 조교 업무 수행상의 어떠한 이유도 없으나 단지 1년마다 조교를 자동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가 지난동안 가져왔던 저에 대한 원만치 못했던 감정을 조교 교체라는 명분하에서 해소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그러한 담당 교수의 악감정은 1993년 6월 15일에 있었던 학과 교수 회의에서 조교 교체를 결정하기도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후임자를 선발하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6월 초부터 절차중에 있게 하였던 것으로 명백하며, 저에게는 단지 '5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고를 한 것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더우기 출근 중지라는 통고가 조교의 임기가 1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지 1년 1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행해진 것은 그동안 저에 대하여 담당 교수가 어떠한 감정을 품어왔었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교수님과 어떤 여자 대학원생과의 소문이 나돌았는 바

자신의 지도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기 시작하여 남한 산성으로, 독립기념관으로 단둘이서만 돌아다녔던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다른 경우로서 매일 아침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시는 교수님의 불쾌한 호의(?)' 때문에 고민했던 여학생을 보기도 했으나 제가 업무 수행상 큰 잘못없이 노력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자위했던 저의 추측은 1993년 6월 25일 담당 교수님의 출근 중지를 통고받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대학 각 학과마다 자율성이 십분 인정되어 학과의 관행대로 조교를 임용하는 서울 대학의 교육 공무원인'조교'의 운용 실태는 화학과 역시 예외가 아닌 때문에 조교로서 근무를 시작한지 1년만에 사직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으나 NMR operator인 조교는 ㅅ 교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도 관례였습니다. 즉, 학과장님도 NMR operator를 추천하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였고 담당 ㅅ 교수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몇 년이고 조교로서 '임용'되게 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라 ㅅ 교수님은 저와 저의 전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전임자도 ㅅ 교수님의 비위에 맞는지 여부로 교체를 해왔으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제가 알게된 그 이전 전임자의 교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이전 전임자로부터 확인된 이야기 -

A양은 ㅅ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조교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교수로부터 '입방식' 제의를 받고 본의와는 무관하게 단 둘만의 입방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수는 A양에게 "연인으로 지내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A양에게 팔짱을 끼게 하고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로 A양의 근무지에 청바지와 운동화를 가져다 놓게 하고 관악산으로 매일 산책 하자고 제의하여 권유에 못이겨 따라나선 A양과 등반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등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교수와 단 둘이만 있는 경우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 구세주를 만난 것으로 느끼도록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이유인 즉은 교수가 이유없이 A양을 교수 연구실로 불러 교수 가까이 앉게 하고 A양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너무 귀엽고 예뻐서 이러는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면 천벌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때문이었습니다. A양이 이러한 교수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다른 여성 후임자를 물색하여 놓은 뒤 A양에게 근무지를 바꿀 것을 사후 통보했습니다.

제가 출근 중지를 통고받은 이후 수일간 담당 교수님 및 학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학과의 규칙에 의해 그만두라는 담당 교수님의 말씀과 담당 교수님이 추천하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학과장님에 의하여 시종 일관 무시되어 허사로 끝났습니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 여자만을 조교로 쓰려고 하였고 매번 같은 이유로 조교를 교체하였던 담당 교수님은 저에게 출근 중지를 지시하던 당시에도 이미 저의 후임자까지도 여자로 선발하였기에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헤아리려는 저의 노력이 담당 교수에 의해 조교직에 연연한 저의 억지로 화학과 교수님들께 철저히 매도당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담당 교수님의 비열함을 관악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학과 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B양을 만나 사실의 확인을 하면서 앞서 말했던 저의 전임 및 그 이전 전임자인 A양의 사례를 들었더니 "그런 정도는 저에게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담당 ㅅ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학생으로서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말을 듣고 B양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학생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면서 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묘하게 이용하여 추태를 보여온 담당 교수님의 언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들의 시정을 진정서와 탄원서를 통하여 총장님께 말씀드려 보았으나 그런 탄원서는 모르겠다고 하는 총장님 비서실의 답변과 이미 총장님이 읽으시고 처리하라고 지시되었다는 본부 교무과의 모순된 답변을 들으면서 탄원의 글을 올린지 1달여라는 시간 동안 사려깊으신 총장님의 선처를 기대했던 것마저 어리석었음을 깨달아,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대학원 자치회로 진정서와 탄원서 사본을 보내고 이러한 사실을 관악의 모든이들에게 알려 공의를 구하고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날로 흉폭해지는 성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직장이나 거리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이나 폭행은 일상 다반사가 된 듯 싶습니다. 저나 저의 전임 조교들, 학생들이 당한 일은 이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유흥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민족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지주이자 긍지인 서울 대학교입니다. 어떻게 여기 이 신성하다고까지 일컬어지는 서울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한두 해도 아니고 몇 해씩이나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족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님!

지성인이란 단지 지식 뿐만이 아니라 인품과 행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배워왔습니다. 민족의 지성을 키워내는 서울대의 교수가 이와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몇 해에 걸친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스승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3만 서울대인의 생활을 책임지고 계신 교직원 여러분!

학교의 행정이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교수님과 교직원님들, 학생들, 서울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전체 서울대인 모두를 위한 것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 과로 대학 본부로 여기 저기로 호소하며 다닌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도 높은 학교 제도의 벽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위해 나름대로 1년여간 열성을 기울여 일한 한 여성의 짓밟힌 권리와 인격을 찾겠다는 정당한 호소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대학의 행정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학업에 여념이 없을 학부, 대학원 학생 여러분!

대학은 진리를 배우는 동시에 실천하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이곳 관악에서 이처럼 직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실천하는 지성으로서의 서울대인의 이름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일이 있은 후, 어떻게든 저의 짓밟힌 인격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는 단지 저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 이후에 또다시 같은 사람에 의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모든 노력이 차례로 허사가 된 지금, 저는 민족 서울 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학생 모든 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 하나의 인격과 권리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와 같은, 저의 전임자들, 학생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또 생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민족 서울대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번 일의 진상을 올바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용기를 내어 이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3만 서울대인 여러분의 양심과 정의에 호소합니다.

1993년 8월 24일

서울 대학교 자연대학 화학과 유급 조교

근무태만 여부에 대한 조사자료

80 MHz FT-NMR Sample 측정 내역

1.본과 의뢰 시료

분 류	月	전 전임자(90/3-91/4)	전임자 (91/5-92/4)	이 교 (92/5-)
		측정 횟수	측정 횟수	측정 횟수
^{1}H-NMR	3	121	———	———
	4	135	———	———
	5	223	207	139
	6	107	120	85
	7	134	84	187
	8	126	88	193
	9	118	132	119
	10	110	125	143
	11	211	199	168
	12	109	74	110
	1	168	176	106
	2	165	174	188
	3	284	221	193
	4	217	153	174
	5	———	———	200
^{1}H-NMR 월 평균		148.53	146.1	154.2
^{13}C-NMR	총 계	45	48	12
2-D.NMR	총 계	12	0	0

2. 외부(타대학교 및 농대, 약대) 의뢰 시료

분 류		전전임자(90/3-91/4)	전임자 (91/5-92/4)	이 교수 (92/5-)
		측정 횟수	측정 횟수	측정 횟수
^{1}H-NMR	총 계	242	208	253
	월 평균	16.1	17.3	19.3
^{13}C-NMR	총 계	5	6	19
2-D.NMR	총 계	1	0	5

화학과 조교 성추행사건을 보는 우리의 견해

1. 이 사건은 조교제도의 문제점과 성추행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여성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1)우리는 이 문제를 일차적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한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사회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켜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식을 가지도록 조장하는 행위', 즉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강간,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우리는 흔히 성폭력 하면 강간만을 연상하는데,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일 뿐이고,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접촉, 성기노출, 성적 농담 등을 모두 지칭한 것이다. 즉 강간이나 성적인 농담이나 성폭력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마찬가지이고 단지 그 정도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본질은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정도나 정조의 침해여부가 성폭력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그 정도가 무슨 성폭력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성폭력은 결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성적인 농담에서부터 강간까지의 연속선 전부가 성폭력에 해당한다. 그 정도를 기준삼아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규정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피해당사자인 여성의 관점에서가 아닌 가해자의 관점인 것이다. 실제로 음란한 언어행위가 한 인간을 죽인 경우를 볼 때(1992년 6월 PC통신을 본 여중생 자살사건)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심각하고 단지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여성은 성폭력을 피해자 경험의 관점에서 명명하고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도둑놈이 '겨우 그 정도 훔친 건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의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 왜 성범죄에 있어서는 '겨우 그 정도 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는가. 범죄자가 더욱 당당하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더욱 의심받고 추궁당하고 비난당하는 유일한 범죄가 성범죄인 것이다.

2)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으로 인해 특수성을 띤다.

①우선 ㅇ조교는 유급조교의 신분으로 학교는 그녀의 직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성폭력은 성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직장내 성폭력과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된다. 직장내 성폭력은 '채용기간이나 근무기간에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거래처 직원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이다(강간에서부터 시각적인 추파, 언어적인 형태의 성적 농담이나 지적, 놀림, 원치않는 성적 유혹과 데이트 강요, 신체접촉, 만지는 것, 성적 봉사 또는 성관계가 명백하게 혹은 암암리에 여성을 채용하는 데 조건이 되는 것 등). 이 때 상대방의 의사는 진정한 의사여야 하는데, '진정한 개인의 의사'란 위계적 권위에 의한 암시적인 강요나 주위의 위압적인 분의기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이여햐 한다.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본다. 직장내 성폭력은 채용과 해고, 승진과 강등, 보상과 징계에 대한 남성권력의 표현으로써 노동통제의 수단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위나 힘을 이용한 성폭력이 더욱 용이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성적 요구를 거절하였을때 승진에서의 배제나, 임금상승에서의 배제, 심지어는 실직을 초래하고 일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성을 더욱 소극적이며 자기방어적으로 만들고 죄의식과 수치심에 빠지게 한다.

ㅇ조교는 ㅅ 교수님께서 ㅇ조교나 그 전임자들에게 껴안고 등을 어루만지는 행동, 손

을 잡는 행위, 팔장끼기(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남한산성, 목공소, 산책, 점심 및 저녁식사 등에의 동행요구와 1박 2일 휴가 제의, 단둘만의 입방식 제의, 드라이브 강요(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등을 하셨다고 진술하였는데,이러한 ㅅ 교수님의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ㅇ조교의 대자보를 통해 밝혀진 ㅇ조교나 전임자들의 진술 속에는 교수님의 제의를 거절하거나 교수님의 행동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 후 교수님의 태도가 달라지시고 곧 해임되어 다른 후임자로 교체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성적불사나 성관계가 명백하게 혹은 암암리에 여성을 채용하는데 조건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The Civl Right Act 제 7조 703항에서는 성적요구를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의 여부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러한 결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거나 위협적이고 불쾌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를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Sex Discrimination Act에서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가의 여부'가 직장내 성폭행의 문제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중의 하나로써, 피해자가 성폭행을 참고, 고용상의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조금이라도 disadvantage를 초래한다면 이것을 '불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②그러나 학교는 일반직장과 성격이 다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도덕감정은 교수님께 일반회사원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기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장소가 학내라는 점에서 더욱 준엄한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들은 학원이 신성한 진리의 전당으로 남아있기를 열망한다. 여기가 기능적인 지식인 생산공장이 아닌 지성의 요람이기를, 교수님이 지식의 판매인이 아닌 우리들의 스승이기를 우리는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수님을 존경하는 만큼, 교수님의 잘못은 더욱 무거운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아닌가?

2.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의 불비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형법상 성적희롱, 가벼운 성추행등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조항이 없다. 또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오직 간음만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 입법례 중 미국의 미시건주에서는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무기나 흉기를 사용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성폭력제 1등급으로, 단순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2등급,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적접촉을 3등급으로, 동의없는 성적 접촉을 4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이 4개등급중의 어딘가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있다. 성폭력에 관한 법적 미비점 및 집행상의 문제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급히 성폭력특별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출한 성폭력특별법안에서는 성혐오행위의 규정과 직장내의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두고 있다.

3.여성문제 연구 동아리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접한 후 진상조사단에 참가 하였다. 학내에서 그것도 최고 지성의 상징인 서울대 교수에 의해 저질러진 파렴치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되거나 무관심 속으로 묻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해결 방안으로 ㅅ 교수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과 수치심에 괴로와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비해 더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나아가서는 모든 여성들이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이라도 거부하고 자신의 인권 보호에 대해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ㅇ조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ㅇ조교와 ㅅ 교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주목한다.얼마전에 있었던 외부인에 의한 미대학우 강간 사건이나 인문대 화장실 사건 그리고 여러가지 소문으로 떠돌던 이야기들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관악학우의 모습은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것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사

건에서도 "저정도가 무슨 성추행이야?"라는 말이 들리는 반면 '교수가 조교에게 행했다'는 것 이외에는 같은 관악 공동체안에서 생활하는 한 여성이 당한 모욕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내재되어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남성 중심적 편견, 가해자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등을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해체하고,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시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임을 일깨워 준다. 우리들의 침묵이나 무관심 혹은 잘못된 편견은 결과적으로 '성폭력의 악순환'을 통해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놓는 것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우리는 ㅇ 조교와 앞선 피해자들, 그리고 수많은 성폭력의 피해자들-김보은, 김진관, 김부남, 윤금이로부터 당신의 무심한 음담패설에 남모를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같은 과 여학생에 이르기까지!)-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있는 한 개인에 의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실을 밝히는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또다시 무수한 익명의 힘이 되어야한다, 권인숙양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많은 얼굴들처럼.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관악 학우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성의식을 좀더 인간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바꾸어 내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악이 앞장서서 아직까지 지지 부진한 성폭력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할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한다. 또한 여성문제 연구 동아리 협의회가 앞장서서 학내 성폭력 고발 창구를 마련할 것이며 학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학칙의 제정을 대학 본부에 촉구할 것이다.

더이상 관악에서의 성폭행은 단순한 놀라움이나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 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며 또다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일어나서는 안될 것임을 서로에게 다짐하며 관악을 사랑과 신뢰 자유로움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 연구동아리 협의회

화학과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유급조교에 대한 교수의 성적 희롱"

이는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 명백해졌다. 진리 탐구와 지성인 양성에 힘써야 하는 교수가 유급조교를 추행(성적 희롱), 그것도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명백한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의심 반, 믿음 반, 긴가민가했던 부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머리 속에만 그리고 있던, 마치 '삼류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사건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등장했다.

하나의 '가능성'이 '현실'로 등장한 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교수 잘라라."

"그 여자 참 용기있는 사람이다."

"잘 해결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지?"

이제는 사실일까 아닐까하는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로 옮겨야 한다. 우리는 올 봄 본교생 강간사건, 인문대 여자화장실 성추행 사건,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둘러싼 논쟁 등, 학내의 여러 성문제를 접했다. 하지만 안일한 대안과 소모적인 대자보 논쟁만 무성하고 말았다.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단순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여긴 결과가 아닐까? 혹은 우리 자신의 문제 즉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개인 간의 문제, 즉 당사자 간의 문제로 협소화시킨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을 그 사건과 무관한 해결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이번 역시 예전처럼 자신은 '객체'의 위치로 한정시킨다면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화학과 조교 사건은 단순한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 즉 성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본부와의 문제, 학원제도의 고루하고 구조적인 모순에서 발생한 문제 등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전반의 문제이며 학우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해결대안 또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인 차원의 대안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1차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대안 내오기 위해서는 사건의 원인규명이 명확해야 한다.

'왜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를 제대로 말하는 과정에서만이 이번 사건의 성격을 명징하게 짚어 낼 수 있다.

첫째,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교수에게 배부른 무엇이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준거 집단의 표본인 교수라는 신분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이는 분명하게 교수의 자질, 도덕성문제, 더 나아가서 교수의 像문제와 결부된다. 교수라는 직업은 교육공무원으로서 共人이다. 이 말은 개인도덕의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에서 생활방식으로 주어진, '가치도덕' 내지는 '사회도덕'까지 중요함을 말해준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수의 자질, 품위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올바른 교수평가제의 도입 등 제도적 접근까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해서 그 교수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의 도덕, 품위에 상반된 행동을 한 교수는 분명 신성한 강단에 서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관악의 이름으로 공개 사과와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보지성의 산실이라는 관악의 이름이 빛날 것이다.

둘째, 교수 조교 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학원생을 비롯한 조교는 지도교수 밑에 마치 농노처럼 수직적인 '봉건적'인 관계를 맺고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관료적이고 봉건적인 조교, 교수 관계 등 조교 제도의 제도적 결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봉건적이고 수직적인 교수, 조교 관계를 지양하고,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로 전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기에 모순투성이인 교수-조교 관계 특히 담당교수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적이고 고루한 조교의 임용에 대한 문제 등을 철저히 개혁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사회에 뿌리깊이 존재하는 봉건성, 관료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제2, 제 3 의 ㅇ 양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명백히 하자. 대학사회 전반의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관계라는 뿌리깊은 모순구조 속에서 우연히 교수의 성적 추행이라는 형태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자.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성격으로 나서는 것처럼 우리는 교수의 퇴진 요구와 공개사과 요구를, 그리고 조교임용 제도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1차적 원인 외에 이번 사건을 통해 몇 가지 본질적인 원인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는, 성적희롱의 일상화에 대한 우려이다. 성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미 만연되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학사회 또한 그 예외가 아님을 확인했다. 또한 직장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적희롱, 추행이 대학사회 내에서도 버젓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번 성희롱 문제를 통해 이전처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학원 전반에 걸쳐 성문제의 위기가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내 성문제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기모색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학본부의 태도 문제이다. 지난 7월 ㅇ 모씨가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대학당국의 무성의와 인권의식의 결여는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본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지적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그 원인의 개선책을 말해보았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 내의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며 교수퇴진과 조교임용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며, 위에서 제게된 문제를 학원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학원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해 책임있게 일을 해 나갈 것이다. 학우들 또한 자기문제, 학우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며 총학생회와 힘있게 그 해결을 위해 나섰으면 한다. 총학생회는 각각의 해결주체와 연대하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생활진보로 생동하는 제 36 대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의 입장

지난 8월 24일 학교 곳곳에 게시된 화학과 유급조교 우모양 명의의 호소문은 우리를 경악케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본교 화학과에서 NMR기계를 담당하는 ㅅ 교수는 ① 교수관리책임하의 NMR담당 여성조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② 휴가를 같이 가자고 하거나 연인으로 지내자는 등 집요하고도 계획적으로 접근하였으며 ③ 여성조교가 이를 거절하면 조교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보복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호소문의 폭로내용은 다른 어떤 성관련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가해자가 교수라는 점, 둘째, 조교임용, 재임용에 부여된 교수의 재량권을 악용하여 여성조교를 희롱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만약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상황의 중차대함을 깨닫고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는 8월 24일 즉각 회의를 소집하여 서울대 총학생회, 여성문제 동아리와 함께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10일 간의 진상조사를 발표하는 오늘 우리는 성희롱이 사실이었음은 물론이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오도된 성윤리로 앓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우월한 지위의 상사가 하급여성을 농락하는 것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ㅅ 교수는 교수라는 신분으로 몇 년에 걸쳐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임용이라는 재량권을 악용하여 여성조교를 희롱해왔다. 이런 사람은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수로서 사회적 존경과 신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더욱이 ㅅ 교수측은 피해여성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폭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시인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또 ㅅ 교수는 어떤 근거도 없이 ㅇ 조교와 친했다는 이유로 연구에 몰두하던 박사를 실험실에서 추방했다. ㅅ 교수는 근무태만에 의한 재임용탈락이라는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실험실 측근들까지 인정하는 지시내용을 전면 부정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에 우리 대학원생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버젓이 교수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서울대의 명예실추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명예란 추악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역사 앞에 떳떳이 스스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교정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교수의 권위 실추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스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부적격 교수, '사이비 교수'를 교수 사회에 포함시켜 둔 채 사회나 학생에 대해 일방적인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학문의 길을 지향하는 우리들은 존경할 수 있는 진정한 스승을 고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ㅅ 교수는 더이상의 진실은폐기도를 중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반성하고 교수직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은 ㅅ 교수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둘째, 조교제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 조교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교수평가제도는 강의평가제이 아니라 자질평가까지 포함하여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